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88
------------	-------

발의연월일 : 2019. 10. 31.

발의자 : 박완주 · 오영훈 · 송갑석

백혜련 · 서영교 · 장정숙

박홍근 · 신창현 · 윤영일

인재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보험상품의 연구 및 보급, 통계생산 및 DB 구축, 손해평가인력 육성,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농업과 어업 등 적용대상에 관계없이 재해보험사업의 운영 전체에 있어 중요한 기초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 중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만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같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25조의
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의2(<u>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u>)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사업</u>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5. (생 략)</p> <p>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 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u></p> <p>1. ~ 3. (생 략)</p> <p>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u></p> <p>③ (생 략)</p>	<p>제25조의2(<u>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u>)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u>-----</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p>---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p> <p>-----</p> <p>③ (현행과 같음)</p>